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㉾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김기성(6574)/ 보험급여팀장 김선우(6576)/ 대리 고영옥(6573)/ E-mail: 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660호

시행일자 2016. 8. 2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38호(2016. 7. 27)

2. 보건복지부에서 [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] 제21조제2항 및 [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]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[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]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04호, 2016. 6. 23)를 개정·발령한 바,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주요 개정내용]

○ 감염예방·관리료 수가 신설

○ 시행일 : 2016년 9월 1일부터

붙임: 고시개정문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